

CCTV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

시행일자: 2023년 6월 5일

제정일자: 2023년 6월 1일

작성자: 사회복지사 채지영

검토자: 요양팀장 임춘경

승인자: 시설장 임춘영

영천백세마을

영천백세마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등에 따라,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권리보호, 노인학대 예방, 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영천백세마을**에 설치·운영되는 CCTV와 관련된 모든 영상정보 수집·처리·보호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기본방침) 영천백세마을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 어르신의 안전 확보, 노인학대 방지, 화재 및 범죄 예방, 권익 보호 등 시설 운영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위해 설치·운영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관리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① CCTV 설치·관리 및 운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책임자: (시설장 임춘영)
2. 관리 책임자: 임춘영, 임춘경
3. 운영 담당자: 임춘영, 임춘경

② 책임자는 CCTV 운영, 영상정보 처리, 민원 접수·처리 등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자 및 관리 담당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영천백세마을 시설 내 CCTV는 총 12대이며, 설치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실내공간 : 1층 10 대 (프로그램실 (주간거실) 2대, 물리치료실 1대, 생활실 1대, 공생복도 1대, 식당·회의실(공생거실) 1대, 공생침실 4대)
2. 실외: 주차장 2대

② CCTV 설치 안내판의 규격은 297mm × 210mm (A4)이며 필수 기재사항은 목적·촬영시간·촬영장소·책임자·운영자·위탁업체 등이다.

③ 부착 위치는 출입구, 담장, 주요공간(복도, 거실 등)으로 정보주체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훼손 시 즉시 교체한다.

④ CCTV 설치 안내판의 양식은 별첨 서식에 따르며, 변경 시 책임자의 승인 후 최신본으로 교체·부착한다.

⑤ 운영 장비(모니터, DVR 등)는 사무실 및 공생 거실 내 잠금 공간에 설치하며, 접근 권한이 있는 자 외에는 조작을 금지한다.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범위 등) 영천백세마을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CCTV 성능 및 해상도 :

- 공생침실 4대: HD급(240만 화소), 해상도 1,280×960, 초당 10프레임 이상
- 주간보호 8대: HD급(500만 화소), 해상도 1,280×960, 초당 10프레임 이상

② CCTV 촬영 시간 : 모든 카메라는 상시 촬영(24시간 녹화) 기능을 유지한다

③ 촬영범위: 촬영범위는 입소자의 생활공간 및 공용공간 내 안전관리 구역으로 한정하며,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 구역은 촬영하지 않는다.

④ 저장장치(기기)의 설치: 본 시설의 CCTV 저장장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DVR로 관리하며,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캡스(ADT) 설치 8대: 사무실 내 잠금공간
- KT 설치 4대: 공생식당 및 회의실(공생거실) 내 잠금공간
- 저장장치는 접근 권한이 부여된 담당자 외에는 접근 및 조작을 금지하며, 모든 접근은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⑤ 영상정보 열람 장소는 사무실과 공생거실 이며,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열람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영상정보 보관 및 삭제 주기 :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60일 이내이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영상은 자동 삭제하여야 한다. (초과 보관 금지)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설치 목적 외의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영상정보 열람)

① CCTV 영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권한 없는 자에게 열람·제공할 수 없다.

② 영상정보 열람 가능 사유

본 시설의 CCTV 영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열람을 제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제1항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열람을 허용한다.

1. 수급자 본인이 본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영상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수급자의 안전 확인을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공공기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 따른 노인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③ 입소 어르신의 신체적 상해 또는 안전과 직결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더라도 시설 책임자의 내부 판단에 따라 문서 요청 없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일시, 열람자, 열람 장소, 사유 등은 별도로 기록·보관하며, 최소 범위 내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 제출서류)

① 영상정보 열람 요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에 따라 진행하며, 열람을 요청하는 자는 목적 및 주체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 검토 후 열람 가능 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및 시행규칙 제25조의5에 따라 결정하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 통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열람 시행한다.

③ 열람 기록 및 제출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열람에 필요한 서류는 표 1에 따른다.

표 1.

구분(요청자 유형)	제출서류	비고(근거 또는 예외사항)
수급자 본인	① 영상정보 열람요청서 ② 신분증 ③ (해당 시) 의학적 소견서	학대 의심 등 긴급사유 시 즉시 열람 가능
수급자의 보호자	① 영상정보 열람요청서 ②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④ (해당 시) 의학적 소견서	보호자 범위: 후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위임대리인	① 영상정보 열람요청서 ②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③ 위임장	위임 증빙 필수
관계공무원 (복지부·지자체·공단 등)	① 공문(요청 공문) ② 공무원 신분증	공문으로 열람요청서 대체 가능
수사기관 (경찰·검찰 등)	① 영장 또는 수사 관련 공식문서 ② 신분증	형사절차 관련 법령 우선 적용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안전업무 수행기관	① 열람 요청 공문 ② 신분증	지자체 담당자와 결과 공유 필수

제11조(영상정보 보호 조치) ① 장비는 사무실과 공생거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만 열람 및 조작할 수 있다. 장비는 반드시 비밀번호, 화면잠금, 열람자 표시 등 보안조치를 적용하며, 열람한 경우 반드시 열람 기록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영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영상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직원은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 장비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 ‘CCTV 운영·관리대장’ 또는 전산관리 시스템에 주 1회 점검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위탁 계약서에 화상정보 보호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첨서식

C C T V 설 치 안 내

목 적	수급자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 치 장 소 (촬 영 범 위)	외부출입(마당), 공동거실, 복도, 침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책 임 자	책임자 : <u>임 춘 영</u> 대표자 054-335-7999 운영자 : <u>임 춘 영</u> 시설장 010-6776-5654 위탁업체 : HCN (Kt skylife) 영천지사 나이스시스템 T. 1855-2542 / 황동훈 010-6277-3349